

-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- 발 신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(담당 : 김태일 간사 02-725-7105 tae1l@pspd.org)
- 제 목 [성명] 연행한 유기족 석방하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
- **날** 짜 2016. 6. 27. (총 2 쪽)

## 성 명

## 연행한 유기족 석방하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보장하라 정당한 농성조차 탄압하는 비정한 정부와 경찰

- 1. 어제(6/26) 경찰이 4·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(이하 세월호특조위)의활동기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종합청사앞에 설치한 농성장에 난입하여 그늘막과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 등을 폭력적으로 철거했다.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항의하는 유가족 4명을 연행했고, 다수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. 자식을 잃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에게 한낮의 햇볕을 가리는 그늘막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정부와 경찰의 비정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. 박근혜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은 유가족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은 물론, 신고된 집회공간을 유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. 또한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모든 방해와 모략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.
- 2. 지금 정부는 법적 근거조차 없이 세월호특조위에 정원 조정안을 통보하며 세월호특조위 활동종료를 압박하고 있다. 해수부는 지난 6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마치 세월호특조위가 세월호 선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처럼 발표했지만, 실질은 10여명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조사인원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었다. 세월호특조위는 해수부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에 의해 독립된 기관이고 선체조사는 당연한 특조위



의 권한이다. 세월호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조 위의 조사인원이나 활동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뿐 이다.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세월호특조위 무력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하고 6월 28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 철 회와 조사기간 보장 및 활동예산 지급을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 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다.

- 3. 더욱이 정부청사 앞 농성은 사전에 신고된 합법적 집회이다. 그늘막도 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햇빛이 강한 낮에만 설치하고 해가 지면 자진 철거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그럼에도 경찰이 농성 소 식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유가족들이 잠시 농성장을 비운 사이에 구청 직원을 대통해서 기습적으로 그늘막과 노란리본을 철거한 것이다. 이러 한 참담한 현실은 불과 10일 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발 표한 한국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. 국제무대에서 시민의 집회결사 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지 를 정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. 경찰의 폭력은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 으며,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비정하다.
- 4. 세월호특별법은 650만명의 국민의 의지가 모여 제정되었다.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얼마 전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이기도 하다. 세월 호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과 예산을 보장하라는 것 은 진상규명을 방해한 입법권력을 교체하고,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낸 국민의 뜻인 것이다. 참여연대는 민심에 역행하여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며, 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 의 사과와 유가족의 즉각 석방을 재차 요구한다. 끝.